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Objective Opin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정일석* · 박준석** · 서상열***

〈목 차〉

I. 서 론	IV.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II. 국내의 민간조사업 현황 및 전망	IV. 결론 및 제언
III. 민간조사법안과 반대 의견	

〈요 약〉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 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탐정, 민간조사, 심부름센터, 민간치안서비스

*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과 박사과정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있어 흔히 논하는 것이 ‘심부름센터’이다. 심부름센터는 우리나라에 1970년대 처음 생기기 시작한 이래 현재 세무서에 공식으로 등록된 것만 500여 개 업체이고 비공식적으로는 3,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성업 중이라고 한다(이상배, 2006). 처음 심부름센터의 등장은 용어 그대로 단순히 대가를 받고 타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차츰 심부름센터의 과다경쟁이라는 공급자적 측면과 보다 다양하고 은밀한 업무를 대행해 주기를 바라는 수요자적 측면이 맞물리게 되면서 그 업무의 내용이 기본 업무에서 변질되어 개인뒷조사, 도청, 채권추심, 협박, 청부폭력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을 대행해 주는 그야말로 ‘해결사’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심부름센터의 업무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부름센터는 단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영업’으로 되어 있어 정부 부처 어디로 부터도 규제나 간섭을 받고 있지 않을 뿐더러 심부름센터 업무 중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가 있거나 간혹 경찰의 일제 단속¹⁾을 통해 불법행위자들을 적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경찰이 좀 더 심부름센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그 폐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심부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아닌 막무가내식으로 심부름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만 인력을 동원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심부름센터에 대해 단속할 근거가 없는 현재로서는 운영상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고 단지 위법행위가 발생된 후 사후 수사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을 뿐 사전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기존에 없던 하나의 자격제도를 신설한다는 의미보다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도 분명히 그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다. 다만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제도 도입 이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준비함으로써 제도 도입 이후의 원활한

1) 경찰청에서는 '05. 2. 14.부터 동년 4. 16. 까지 심부름센터의 불법도청, 개인사생활침해,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유출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1,017명을 입건(구속129명)한 사실이 있다.

정착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조사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도입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되는 시점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²⁾ 본 연구에서는 2005년 9월 8일 의안번호 172591로 이상배 의원 등 35인이 제안한 ‘민간조사법안’을 토대로 하여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1세기 사회변화와 민간조사제도

시대의 변화와 수요-창출의 경제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새로운 제품들이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오듯이 직업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설경호원’, ‘민간교도소’, ‘사이버보안 연구소’ 등의 단어나 직종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되고 사회적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냉전시대를 거쳐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전 세계적 확산은 기존 국가위주의 경제체제가 민간위주의 경제체제로 완전한 변화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최소국가의 원칙’이 강조되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위주의 관료주의적 사고의 한계점이 인식되면서 국가 사법, 행정 분야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현저히 늘고 있다. 특히 사법 분야 중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수사력의 한계로 인해 범죄로부터의 피해예방,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구제, 발생 범죄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의 수집을 더 이상 국가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현재의 형사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와 공판정 중심주의로 전환시켜려 하고 더 나아가 배심제도의 도입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황정익, 2005). 사법제도 개혁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증거수집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범죄의 수사는 국가 사법기관이 담당하지만 공판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의 수집은 더 이상 국가 사법기관만의 몫은 아니다. 이에 소송행위의 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에게 공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담당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사법정의와도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7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회원국들 간에 교류가 활발해 지고 외국의 거대자본이 유입되면서 민간경비영역에서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이 늘고 있다. 이러한 민간영역 중에서 외국의 기업과 거대자본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탐정’이라는 상호를 대신하여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민간조사영역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대 시장

2) 2007. 4. 16.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본관 446호)에서 개최된 ‘민간조사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이정환은 본 법안의 도입과 관련하여 총론적인 검토의견으로 “적극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을 형성해 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국민정서상 국민들이 민간조사업무의 음성적, 불법적 요인에 대해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 민간조사제도 도입 이후에도 국내 업체의 국제 경쟁력은 심히 우려되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민간조사업에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은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민간조사영역에 있어 극단적인 양분화 양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체계적인 조직력과 각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민간조사업체가 국내에 진출하여 민간조사영역 중에서도 기업영업비밀, 소송증거자료수집, 보험범죄, 저작권 등 고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를 담당할 것이나 이와 반해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경험이 부족한 국내 민간조사업체는 단순 서류대행 등 심부름 업무, 개인의 뒷조사, 신용조사 등 저수익이 창출되는 분야에 밀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민간조사제도의 시행을 늦출수록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잠식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조기에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을 통해 국내 민간조사업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잠식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II. 국내외 민간조사업 현황 및 전망

1. 국내 민간조사업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에 흥신소와 비슷한 ‘신용고지업’ 이라는 것이 있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법령으로 ‘신용고지업취제규칙’ (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이 있었으며 1960년대 5·16군사혁명 이후 1961년 9월 23일 ‘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되었다(나영민, 2005). 이때부터 신용고지업이 흥신업으로 변경되었으며 흥신업이 현재의 민간조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흥신업단속법에서 규정한 흥신업이라 함은 주로 경제적인 신용문제에 대하여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업으로 동법 제1조를 보면 주로 경제적인 신용문제에 관하여 다루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에서는 법인설립을 허가요건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운영은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감독기관으로 관할 경찰서장을 지정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할만 한 점은 현재와 같이 당시에 흥신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보원, 탐정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흥신소는 군사정권 시대에 법보다는 폭력을 이용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속칭 ‘해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국민 정서상 ‘홍신업자=탐정’ 이라는 이미지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본다. 이후 1970년에 들어서면서 홍신업단속법을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수단으로 생겨난 것이 ‘심부름센터’ 이다. 현재도 많은 업체들이 심부름센터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순수하게 민원서류 대행이나 각종 심부름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지만 과거 홍신업단속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심부름센터는 돈만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 들고 있으며 심지어는 살인 범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고 있다.³⁾ 서류대행 및 심부름을 업으로 하는 심부름센터도 있으나 이들 업무는 각종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이윤으로 창출하므로 큰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심부름센터 입장에서는 보다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대행 업무를 원하게 되었고, 한편 개인의 뒷조사나 도청행위 등 불법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의뢰인은 다소 비용의 부담이 되더라도 이를 대행하여 줄 수 있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고자 하여 결국 ‘필요공급의 원칙’ 이 성립하게 되었고 심부름센터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불법행위를 대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도청,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 불법채권추심, 협박(공갈), 청부살인 등 매우 다양하다.

<표 2-1> 심부름센터 단속실적

기간: 05. 1. 28. ~ 3. 15. ()구속

구분	계		청부살인		불법도청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		불법채권추심		기타(공갈, 사기 등)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655	1,017 (129)	2	8 (8)	13	18 (4)	154	230 (30)	158	218 (33)	177	336 (42)	151	207 (12)

출처 : 경찰청

그 중에서도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중 80~90%는 간통현장의 불륜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라 한다. 상기 열거한 외에도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유형과 그 방법은 다양하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현황과 그 불법행위의 유형은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밝혀내기가 어려워 실제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청부살인’ 등의 카페를 은밀히 개설하여 의뢰를 받고 살인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살인청탁하실 의뢰인을 모십니다’ 라는 스팸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2. 주요국가 민간조사업 현황

국내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간조사제도가 일찍이 정착된 주요 국가들의 민간조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향후 국내 민간조사업의 현황 및 전망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미국

미국은 일찍이 자치제도를 뿌리내리고 있으며 각 주별로 민간조사업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민간조사업 주요 고객은 보험회사와 변호사이며 연예인, 정치인들도 민간조사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법제도에서는 형사소송에 있어 배심원들로부터 무죄평결을 얻어낼 수 있도록 증거의 수집이 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민간조사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제출한다. 또한 민간조사원의 의무로 범죄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 변호사처럼 고객에 대한 비밀 보호의무도 부여되고 있다(강효훈, 2001). 형사소송 뿐 아니라 기업사이의 상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도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데 민간조사원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와 경쟁사인 폭스바겐 사이에 대규모로 기업비밀문서가 유출되어 소송이 벌어졌을 때, 결정적인 증거로써 폭스바겐사가 유출된 그 문서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라고 비밀스럽게 고용한 컴퓨터 전문가를 직접 찾아내 진술을 받아 낸 것도 민간조사원 이었으며, 1993년 무역빌딩의 테러와 관련하여 빌딩의 관리자가 테러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70명의 피해자에 의해 집단으로 20억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제기된 사건에 있어 빌딩관리회사의 전직 안전고문이 이미 그러한 위험을 경고했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밝혀낸 것도 민간조사원 이었다(황정익, 2005). 또한 미국에서는 소액절도나 사기사건, 유아나 어린이 학대사건 등과 같이 경찰력에 의존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진 사건의 경우 민간조사원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의뢰인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익을 우선시하여 조심성 있게 접근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경찰력은 공적기관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안전에 치우쳐 인권 등이 침해될 소지가 높아 민간조사원이 그 공백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과 민간조사원의 관계가 상호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이상배, 2006).

미국의 민간조사업 산업은 1980년대 이후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1994년도에는 이미 민간조사업의 매출액이 33억불 정도에 이르며(Jeff Barge, 1994), 2000년도에는 46억불로 추정될 만큼 대규모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2000년 기준 미국의 민간조사회사는 2만3천여개이며 민간조사원은 약 9만명에 이르며 대부분의 민간조사원들은 대체로 전직

수사관 출신들이다(강효훈, 2001).

2) 프랑스

프랑스는 1983년 제정된 ‘안전확보를 위한 사적 업무에 관한 법률’에서 경비업과 함께 민간조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가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2003년 개정법에서 민간조사업의 허가제도, 민간조사원의 인가제도, 자격제도 등을 정하고 있다. 민간조사업무로는 기업대상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대상 서비스는 감소하고 있다. 대규모 민간조사업체는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나 재무조사 등의 기업대상의 조사를 특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작은 민간조사업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갖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나영민, 2005). 개인대상 민간조사업무의 감소 이유로는 주된 업무내용이었던 이혼에 관한 정보수집이 간통제의 폐지와 간단히 이혼 할 수 있는 이혼 방식의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였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대방의 수색, 결혼 전 신원조사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3) 중 국

중국에서는 민간조사업에 관한 논의가 1993년에 있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사무소 설치를 무조건 금지시키고 있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공식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국 내의 민간조사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외국인이나 내국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잠재적인 수요로 남편과의 불화를 겪는 기혼여성에 의한 불륜행위 증거수집이 떠오르고 있다.

한편 2001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 ‘개인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집된 비밀스런 기록 등도 법적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려 이를 계기로 민간조사원이 공공장소는 물론 사유지라도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여 수집한 사진, 녹음, 기록 등도 법정 증거가치가 인정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조사업체만 지난 10년 사이에 수백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황정익, 2005). 중국에서 실제 활동하는 외국계 민간조사업체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연구소’ 혹은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내 민간조사원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일 본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특별한 법률규정은 없으며 대체로 3,000-4,000개 정도의 민간조사업체가 있고 활동하는 민간조사원 수는 8-10만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민간조사업자의 서비스와 관련 2004년 한해 동안 ‘국민생활센터(우리나라의 소비자신고센터와 유사)’에 민간조사업 관련 피해현황은 1,400여건이며 주요 내용은 부당요금요구, 계약사항 미이행 등이다(나영민, 2005). 이러한 민간조사업의 사회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민간조사업 관련 업자를 규제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2006년 6월 8일 ‘민간조사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60호로 공포되어 민간조사업을 규정하고, 계약의 적정화,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 교육 및 감독, 영업정지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국내 민간조사업 수요 및 전망

민간조사제도의 국내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국내 민간조사업의 수요와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국내 민간조사업 발달에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민간경비 시장이 그러하였듯이 거대 자본과 기술력, 노하우를 가진 외국 기업들의 국내 민간조사업 시장의 적극적 마케팅과 침투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대부분의 OECD 가입국들이 민간조사제도를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민간조사원의 기술력과 조사능력, 정보처리능력, 국제협력능력, 자본력 등은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해 왔음에 비하여 국내 민간조사업은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국내에는 외국의 민간조사원이 국내에서 각종 컨설팅회사라는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다(이동영, 2001). 이러한 외국의 민간조사 활동영역은 국내에서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이나 채무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외국계 명품 제조 회사들의 상표권침해 여부를 국내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음반 및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 한국에 진출한 기업체의 국내 시장 수요조사 및 분석을 대행하는 것 등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의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더욱이 경상 무역외거래의 주체는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무차별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계 민간조사원의 국내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전혀 없다(황정익, 2005).

외국계 민간조사업체의 선진 기술력으로 말미암아 향후 국내 민간조사업 시장은 크게 고수익을 창출하는 영역과 상대적으로 저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으로 이분화 될 것으로 전망 되는 바, 고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은 주로 기업의 재정이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담당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요하여 민간조사원의 고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큰 영역인 반면 저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은 경비업무에서부터 개인의 사생활 조사, 실종자 수색 등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영역은 <표 2-2>과 같다.

〈표 2-2〉 수익성 차이에 따른 민간조사영역의 분류

고수익 영역	저수익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조사 ◦ 저작권 및 상표 위반 ◦ 특허권 침해 ◦ 산업 스파이(기업보안) ◦ 불공정 거래 조사 ◦ 인수 및 합병(M&A) ◦ 은닉재산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탐정(단순 감시 업무) ◦ 직원의 경력조사 ◦ 개인의 사생활 조사 ◦ 실종자의 소재파악 ◦ 단순 증거 수집 및 보전 ◦ 도주자 체포 ◦ 신용도 조사 ◦ 교통사고 조사 ◦ 보험사 제조사 업무

민간조사 업무 영역 중 고수익이 창출되는 영역과 저수익이 창출되는 영역으로 분리하여 볼 때 외국계 민간조사업체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에서 그 활동을 영위할 것이며 고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에서 기술력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국내 민간조사업체는 저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영역체계는 경제적 논리로 설명 될 수 있는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회계조사 등은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며 잘못될 경우 기업의 손실이 막대하므로 의뢰에 따른 비용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의뢰하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도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민간조사업체는 높은 보수를 받는 만큼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던 실적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전문성과 축적된 기술력,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내 민간조사업체는 그러한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Ⅲ. 민간조사법 법안과 반대 의견

민간조사제도의 법안 제정과 제도 도입에 따른 반대 의견의 제기는 단순 반대 의견 제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의 도출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반대를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동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기획이사 이정환변호사는 이상배 의원이 제안한 ‘민간조사법’ 제정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 이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

4) 본 연구에서 이하 기재된 대한변협 이정환변호사의 주장은 2007년 4월 16일 국회 행자위 소위원회에서 개최된 민간조사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정환 변호사가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내용이 대한변협의 공식적 입장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해 그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동 제도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새로운 직역을 창설함으로써 기존 직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는 것이다. 이정한 변호사는 기존 심부름센터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간조사업을 단순히 심부름센터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는 이상배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 법안의 핵심 내용과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 대해 살펴본다.⁵⁾

1. 민간조사업 법안의 내용

1) 입법 필요성 및 제안이유

민간조사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성업중이라는 사실은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단순 사실조사에서 청부폭력, 살인 등 그 형태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 과거 경비업법의 예⁶⁾를 보더라도 더 이상 불법적인 민간조사행위를 방치해서는 곤란하고 법적 제도화를 통해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여 민간조사원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음성화되어있는 민간조사를 법률을 통해 양성화하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합격자 중 일정한 연수교육을 수료하고, 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사람이나 법인만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인권침해와 범죄행위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민간조사제도 확립을 통해 민간조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민간조사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8장, 5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등록을 통해 법에서 정한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2007년 4월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을 기초로 하여 이상배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법안과 대한변협 이정한변호사의 반대의견에 대해 기술함.

6) 민간조사와 유사하게 1995년 “경비업법” 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설 경호업체들이 성업중 이었고, 이들에 의한 관명사칭, 사기 등의 범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된 바 있으나 법 제정 이후 예방, 억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 민간조사법안 구성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업무범위	각종 사실조사·소재확인 등, 일정 분야 수집·조사의 제한	제3조·제19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1·2·3차 시험 실시	제5조·제6조
영업등록	등록신청, 기부 및 취소, 폐업·휴업 신고 등	제2장
권리·의무	업무보조원 고용, 공무집행방해의 금지, 위법발견시 신고의무 등	제3장
법인·협회	합동법인 및 협회의 설립, 공제사업 등	제4장·제5장
징계·벌칙	2년 이하의 자격정지·견책 등 징계, 형사처벌·과태료 등 벌칙	제6장·제8장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안 제3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포괄적으로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민간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표3-2〉의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 내용 중 제1호인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업무범위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와 충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범죄수사는 현재 경찰 및 검찰의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는 바, 이를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로 설정할 경우 국가의 수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아울러 민간조사 제도의 성격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민간조사 제도는 공권력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범죄 관련 조사를 업무범위에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2〉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

호	업 무 내 용
1	범죄 및 위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6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7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원은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조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의 소유자에게만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일정 경력의 소유자에게만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문호를 개방하되, 경력소유자에게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법안 반대의견

대한변협 기획이사 이정환변호사는 동 법안과 관련하여 총론적인 의견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창설 및 이를 위한 민간조사업법의 제정에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동 제도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새로운 직역을 창설함으로써 기존 직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1) 심부름센터에 의한 불법사생활 침해

이와 관련하여 심부름센터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이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하여 민간조사원 자격을 창설하고 그렇게 하여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법집행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않은 심부름센터에서 무슨 특별한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을 호도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꾀하고 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탈법·불법을 자행할 때에는 마냥 방치하다가,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반화되었으니 양성화하자는 식의 입법은 엄격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일 민간조사업자에게 현행 법제 하에서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국민의 신상정보 등 공공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본 법안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더욱 심층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안 제19조는 정보수집의 제한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그 나머지 정보를 일반적으로 수집·조사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경우 민간조사원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져서 다른 사람의 신용이나 비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커지게 되므로 오히려 그 반대로 수집·조사 가능한 정보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변호사 및 수사기관의 영역 침해

본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의 직무는 모두가 경찰 등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이거나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원이라는 새로운 직역을 창설하여 경찰업무를 맡긴다면 업무 간 충돌이 없을 수 없고, 이미 변호사의 업무로서 정착된 업무를 떼어내서 민간조사원에게 준다면 그것은 변호사의 직역에 대한 침해로서 분명히 직역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민간조사원의 업무(안 제3조)와 관련하여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 ’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 ’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

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찰공무원 등이 수행하여야 할 공무를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안 제55조와 같이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 를 행위주체로 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민간조사업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자격소지자(예를 들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입 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실상의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함)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다른 법률과의 모순, 다른 직역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정보의 편중

현재의 법제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민간조사원이라는 새로운 직역을 창설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라도 공익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공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집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본령(本領)이지, 이러한 본령을 도외시한 채 민간조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顛倒)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IV.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의견에 대한 고찰

이상배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

1.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불법적인 도청, 몰래카메라 설치 등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노호래, 2001). 현재 난립하고 있는 심부름센터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뒷조사를 하며 불법적인 도청 장비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조사제도 도입 이후에도 민간조사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으로 이는 민간조사제 도입에 따른 근본 취지를 오해한 것에서 기인한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를 법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요인을 사전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단순히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만 바꾸어 운영하는 것에 대해 묵인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경찰의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개인의 뒷조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는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인 점을 고려하여 동 법안에서도 민간조사원자격시험(제6조), 결격사유(제7조), 민간조사업의 등록(제8조) 등 민간조사원의 자격과 사무소 운영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19조(수집·조사의 제한)에서 ‘개인의 정치적 사상·종교적 신념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자료의 수집과 조사에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로 말미암아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업으로 하는 심부름센터는 민간조사제도의 제도권으로 흡수되지 않고 자연 도태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조사제도 도입이후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동 법안에서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국가에서는 민간조사원 자격인증과 관리시스템을 도입 후 철저히 관리하여 어느 정도 국가개입을 통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⁷⁾

2. 변호사 영역의 침해

변호사 제도는 1905년 광무변호사법, 1909년 융희변호사법을 시초로 현재의 변호사법에 이르고 있으며 변호사법에는 각종 규정과 더불어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다. 변호사 영역과 관련하여 일부 변호사들은 현재 한국의 법률서비스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수집 업무까지 대행하여 줄 수 없다며 법률조력자로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이명재, 2005). 하지만 이는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일 뿐 대한변협에서는 동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의 직무가 대부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하여 민간조사원이라는 새로운 직역을 창설하면 이미 변호사의 업무로서 정착된 업무를 떼어내 민간조사원에게 주는 것으로 변호사 직역에 대한 분명한 침해로 보고 있다. 현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뿐 아니라 비송사건, 가사조정, 심판사건, 행정심판,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뿐 아니라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조사원의 업무영역의 상당부분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그 영역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 업무영역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7) 한편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경우 공개적인 수사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민간조사원이 수사기관의 한계를 극복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더 유용할 수가 있는데 성범죄나 가출사건 조사 등이 그러한 경우다.

물론 현행 변호사법과 민간조사원의 업무분야가 상충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은 사실이므로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입법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황정익, 2005)는 것은 일응 수긍된다. 하지만 유독 변호사만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은 문제시 하지 않고 민간조사원의 업무영역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직업이 변호사의 직업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은 인정키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변호사와 민간조사원은 직업영역에 있어 상충이 아닌 소송의 대리 업무는 변호사의 영역으로 소송과 관련된 증거수집 및 제조사 관련된 부분은 민간조사원의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유독 우리나라는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적 행위 뿐 아니라 비법률적 행위의 대리마저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변호사의 영역자체를 민간조사원이 침해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변호사의 선임을 통한 소송대리와 소송과 관련된 증거의 수집과 제조사에 대해 변호사의 고유영역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의 관념 속에 변호사의 업무는 소송의 대리인으로 인식할 뿐 소송사건과 관련된 유리한 증거를 직접 찾아내 주거나 제조사를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부 변호사들마저도 소송사건과 관련된 증거의 수집과 제조사를 위한 법률조력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모든 법률상의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법률에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이상배, 2006),⁸⁾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범죄수사 전문가의 조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굳이 국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볼 때(황정익, 2005), 결국 변호사제도는 법률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법적 평등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이상적 목표를 감안하여 보면 소송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의 모순점을 밝히는데 민간조사원의 역할은 크다고 할 것이며 민간조사원은 단순히 변호사의 법률조력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직업의 독자성을 가지고 변호사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에 반(反)하지 않는 직업 영역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

8) 이상배 의원은 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도 일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며, 직업으로 경제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업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하며 모든 직업은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현대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사제도 시행에 발맞추어 변호사법과 민간조사법안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상충이 아닌 상생(相生)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과의 대립

동 법안에 의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중 ‘범죄 및 위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등은 사실 현재까지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이 담당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무(公務)로 여겨 사인(私人)에 의한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영역이 사인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체의 검시나 화재조사, 인영 및 필체 감정, DNA 감정 등 각종 감정 업무는 예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수사기관이 의뢰를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재판과정에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각 감정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감정업체가 생겨 일반인이면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업체를 이용하여 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다른 감정의견을 가지고 법정에서 다툼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민간조사의 영역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민간조사원의 업무 영역만을 두고 볼 때 수사기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범죄에 대하여 수사는 범죄를 사후에 진압하고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며 수사가 잘못 이루어 질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침해를 받게 되어 수사는 국가가 가지는 것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이상배, 2006)는 주장에는 누구나 이의 없이 수긍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된다고 수사的主체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며 단지 민간조사원은 수사기관에서 놓치기 쉬운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협력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결국 민간경비의 등장으로 인해 범죄발생 기회요인이 줄어들고 범인의 검거율이 향상되는 것과 같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범죄수사의 사인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보다는 민간조사원에 의한 수사협력 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대국민 수사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력할 의무, 조사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이 명령이 발동될 경우 증거자료 제출 의무 등을 동 법안에 적절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빈부 격차에 따른 정보 편중

빈부의 차이에 따라 민간조사원 고용기회의 제한으로 빈부간의 정보격차가 예상된다. 이는 주장은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혹은 사회제도가 갖는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나영민, 2005)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인 범죄 및 위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 각종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의 수집에 있어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민간조사원을 고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민간조사원을 고용할 수 없어 불평등 현상을 초래한 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주장은 자유경제체제에 있어 그 설득력이 전혀 없다.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이론인 공동화이론, 이익집단이론, 수익자부담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에 있어 국가예산의 한계로 인한 사회다원화에 미치지 못하는 공권력으로 인해 국가는 더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분야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⁹⁾ 변호사제도 역시 빈부의 차이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빈부격차를 제도 도입 반대 이유로 표명하지 않는 것이다. 변호사제도 뿐 아니라 민간경비, 사설경호원 제도 역시 빈부격차를 이유로 한다면 제도 시행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제도의 도입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구조업무를 통해 전체적인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민간경비 제도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가가 손이 미치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 범죄예방의 효과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 문제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효과가 더욱 크기에 제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역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화재·사고·손실·사람의 상해·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민간영역에서 그 해결을 위한 각종 제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한다고 본다. 또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민간자체의 문제해결 범위가 넓어져 민사상 고소고발 감축 등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의 낭비요인이 줄어들고 민생치안역량이 강화되어 재력 없는 국민들에게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나영민, 2005).

아울러 빈부격차로 발생하는 민간조사제도 이용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민간경비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선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을 통해 규정된 보수를 지정하고(동 법안 제17조) 업체의 자연스러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적정성의 보수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

9)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김성연은 민간경비를 지탱하는 보안의 상품화 논리가 보안의 불평등한 분배를 야기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다. 따라서 동 법안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보수에 관한 기준과 상한선을 엄격히 제한하여 일반적인 사건의 제조사에 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보험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의료사고 분쟁, 교통사고 원인과 제조사,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견하였기 때문이다. 막연히 사회적 필요성만 가지고 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만을 강조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국민정서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도 도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는 민간조사제도 자체를 심부름센터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 이전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원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 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원에 의한 업무 영역을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숙(2006). 「한국의 공인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강효훈(2000).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서울:동아일보사.
- _____(2001). “외국의 사설민간조사제도의 활용사례와 고찰”. 『수사연구』, 4월호.
- 김상균(2006).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 경찰청.
- 김성언(2004).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원태(2006). “민간조사원의 권한남용 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대한민간조사학회.
- 나영민(2005). 「민간조사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노호래(2001). 『공인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현실적인 문제점』. 수사연구, 2002년4월.
- 손상철(2005). 『민간조사학개론』. 서울:백산출판사.
- _____(2006).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경찰청.
- 이동영(1999). 『21세기 공인탐정이 뜬다』. 서울:굿 인포메이션.
- 이상배(2006). “민간조사제도의 정착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2006정책연구보고.
- 이상원(2006).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경찰청.
- 황운하(2002). 『공인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수사연구, 2002년4월.
- 황정익·김윤철·백창현(2005), “공인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소. 행정자치위원회(2007).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 공청 회자료집.
- Jeff Barge(1994). Thanks partly to Lawyers, PI income soars, ABA Journal.
- Larry Smith(2004). How Attorneys and Investigators Work Together in the Post-Enron Environment, Of Counsel, April.

ABSTRACT

A Study on the Objective Opin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Jeng, Il-Seok · Park, Jun-Seok & Suh, Sang-Yul

Our society's modernization created many opportunities for us to need a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Vari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due to joining in the OECD, opportunity of individual legal, collect evidence during judgement, prevention of damage criminal, security of business in company, free trade economy's system etc and don't need to enumerate how important of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n addition to there are lots of objection opinions, such as possibility of person's private life, invade of lawyer's area, confliction with investigation team, gap of wealth and poverty that make preponderance of information.

So this research can be considerate from objective opinion, and can obtain conclusion just like below.

First, private detective agencies that encroach on the individual rights will naturally deteriorat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Through this, the probability of civil rights encroachment will be lower, and for this to happen there needs to be a thorough maintenance of the system.

Secondly, mutually beneficial solution should be found not by a conflict between two sides. Detective business sector should not cause social confusion from conflicts with other investigation organization such as police, or investigators, rather, it must get on the demand of the diversified citizen and maintain the diverse sector inter-cooperate right, and to do that law and institution must be made for the base.

Thirdly, investigation used depending on the gap between wealth and poverty does not mean the actualiz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itizen. If the duty of investigation sector is to find the evidence and collect or manufacture of the evidence, then the problems which the nation can't handle will be more enlarged and then finally end up with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national public security demand.

Key word: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